

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대안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·운영함으로써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·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(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)
 -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함.
 -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.
 - 임원은 이사장 및 총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로 구성함.
 - 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함.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(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)
 -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·운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·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함.

- 장기차입과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.
 -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비, 인건비, 경상적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.
-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(안 제27조부터 제44조까지)
- 학위과정을 규정하고 학생의 입학자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.
 -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의 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.
 -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받은 경비를 반환하도록 함.
 -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·실습기관을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으로 규정함.
 - 이 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복무할 의무를 부여함.
 -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의사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을 정할 수 있음.
 -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고,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기준 등을 결정함.
 -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,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

소가 가능하도록 함.

-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가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며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.

○ 지도·감독 및 벌칙(안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)

-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지도·감독함.
-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자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유사 명칭 사용 시, 의무복무기관의 장 또는 의무복무의사가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15조에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·대부,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¹⁾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임.
- 재정경제부도 안 제15조의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은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- 그 밖에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박 혜 진)

1)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 제4조(국유재산특례의 제한)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.

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.

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.